

##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발의연월일 : '99. 6.

발의자 : 김일용 외 3명

### 1. 개정이유

협의회구성원의 명칭이 협의회의 설치목적에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구성원의 명칭을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협의회의 구성원 명칭중 “의장, 부의장”이라는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 3.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 조례

### 4. 개정조례안 :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및제2항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의장등의 직무”를 “위원장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p> <p>③~④ (생략)</p> <p>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p> <p>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p> <p>제6조(회의등) ①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②~③ (생략)</p> <p>제8조(운영규칙)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p> <p>②위원장.....부위원장.....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 ..... .....</p> <p>②부위원장...위원장.....위원 장.....</p> <p>③.....위원장..... .....</p> <p>제6조(회의등) ① ..... .....위원장.....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운영규칙) ..... ..... .....</p> <p>.....위원장.....</p>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1)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99. 6. 16

나. 발 의 자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일용의원 외 3명

다. 위원회 회부 : '99. 6. 24

라. 위원회 상정 : '99. 6. 25

## 3.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일용의원)

협의회 구성원의 명칭이 협의회 설치목적에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구성원의 명칭을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 협의회 구성원 명칭중 “의장, 부의장”이라는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원수)

제3조(구성) 제1항, 제2항의 “의장과 부의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의장, 부의장”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6조(회의등) 제1항, 제8조(운영규칙)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